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1092		
최초 등록일	20170915	최종 등록일	



육회 이야기 정보공개서

(주)쿠킹가이드즈



육회이야기 정보공개서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가맹점 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바랍니다.”

[육회이야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2 . . .

[가맹본부의 주된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5길 18, 지충(구의동)]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TEL. 02-1811-0068]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FAX. 050-8054-0068]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사용하게 될 상호, 명칭, 영업표지등
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현 임원 정보
7. 임직원 수
8. 동일/유사 사업 경영 사실
9.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사업개시일
2. 연혁
3. 업종
4. 가맹점 및 직영점 수
5.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가맹점 수
6. 당해 가맹사업 외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 현황
10. 광고 및 판촉 실적
11. 가맹금 예치
12. 피해보상보험 가입내역 등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사업자의 의무요약
- 1. 물품구입 및 입차
- 2. 거래주선의 대가내역
-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 4.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 보호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관리 및 감독
9. 광고 및 판촉 조건 및 비용 분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용

VIII. 교육 / 훈련 프로그램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수 있는 불이익

IX.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쿠킹가이즈의 “육회이야기”)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
- 귀하 : 당사와 “육회이야기”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브랜드		주소			
(주)쿠킹가이즈	육회이야기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5길 18, 지층(구의동)			
	설립일	법인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20.02.22.	2020.02.17.	2020.02.22	김지희	02-1811-0068	050-8054-0068
	법인등록번호		110111-7391628	사업자등록번호	869-81-01784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이사	김 지 희	(주)쿠킹가이즈	육회이야기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5길 18, 지층(구의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지희	02-1811-0068	050-8054-0068

1) 가맹사업법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2) 당사는 내국 기업으로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기업에 가맹사업 브랜드를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육회이야기]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 용	추가설명
명칭	육회이야기	신선한 국내산 한우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그대로 느낄수 있는 육회 전문점
상호	육회이야기 000점	-
상표서비스표		43류 40-2017-0061412 35류 40-2017-0061411 31류 40-2017-0065061 30류 40-2017-0061407 29류 40-2017-0061404 25류 40-2017-0065059 21류 40-2017-0065048 18류 40-2017-0065044 16류 40-2017-0065025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84,531	106,928	77,603	1,610,397	86,151	79,314
2022년	171,107	37,663	133,443	1,160,300	51,456	25,841
2023년	214,449	62,740	151,708	803,886	20,003	18,26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신현중	대표 이사	2019.10.~현재	맛담꼬 어린이대공원역점 대표	경영
			2020.02~현재	육회이야기 화양점 대표	경영
			2020.02~2022.11. 30	(주)쿠킹가이즈 대표이사	경영
	신향숙	이사	2010.07~현재	(주)애플앤유 대표이사	경영

			2012.02~현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사	관리
			2018.11~현재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경영
			2020.02~2022.11.30	(주)쿠팡가이즈 사내이사	경영
	박영숙	이사	2021.08~2022.11.30	(주)쿠팡가이즈 사내이사	경영
			2021.12~현재	육회이야기 광진점 대표	경영
	김지희	사내이사	2022.11.30~현재	(주)쿠팡가이즈 사내이사	경영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1) 당사의 [육회이야기]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및 등록신청 여부	출원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육회 이야기		등록거절	40-2017-0061412	(주)쿠팡가이즈	-
		등록거절	40-2017-0061411		-
		등록거절	40-2017-0065061		-
		등록거절	40-2017-0061407		-
		등록거절	40-2017-0061404		-
		등록	40-2017-0065059		2028.1.26
		등록	40-2017-0065048		2028.1.26
		등록	40-2017-0065044		2028.1.26
		등록	40-2017-0065025		2028.1.26

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육회이야기] 가맹사업 현황

1. [육회이야기]를 시작한 날 : 2017년 12월 12일 입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7년 06월 16일)

2. [육회이야기]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대호가	육회이야기	임영서	2017.12. ~2020.03	서울시 중구 다산로 56 남산정은스카이빌103호
(주)쿠팡가이즈	육회이야기	신현중	2020.04.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5길 18, 지층(구의동)

			2022.11.30	
(주)쿠키가이즈	육회이야기	김지희	2022.11.30 ~ 현재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45길 18, 지층(구의동)

3. [육회이야기] 업종

영업표지	업종	
육회이야기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육회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육회이야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8	8		8	8		6	6	
서울	8	8		8	8		6	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육회이야기]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	3	0	0	3	8
2022	8	-	-	-	-	8
2023	8	3	-	5	-	6

6. [육회이야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육회이야기]는 가맹사업자 한명이 2023년도에 올린 연간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

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상한)		연간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3개월미만 / 자체포스
전체	6	373,121	33,413	697,934	46,527	154,600	15,457	
서울	6	373,121	33,413	697,934	46,527	154,600	15,457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지역적 상황,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지역내에 있는 마케팅 노력 여하, 가맹점사업자가 발생한 매출액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육회이야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육회이야기]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1,17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당사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금융과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180	02-463-515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양식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전국 우체국 금융과에 가맹금을 예치 시키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육회이야기]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②	조치일자 ^③	조치내용 ^④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육회이야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로열티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될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68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가맹점 오픈 이전 해지 시 일부 반환 단, 가맹점 오픈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오픈 이전에 소멸 되는 비용임	위약금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 해지 시 전부 반환	개점 전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의 대가	단, 교육 훈련 개시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로열티	1,980	계약체결후 60일 이내	잔여 계약일 수에 따라 반환	지적재산권 이용	

2)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종류 시, 가맹본부에 발주한 물류품목에 대하여 미지급채무가 있을 경우	상계처리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원)
합계	11,68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로열티	1,98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20평~30평)	면적 33.2㎡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4,150~94,400]				
인테리어	[쿠킹가이즈]	35,200~52,800	1,760	오픈 7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설비 및 집기류	[쿠킹가이즈]	13,200	440~660	오픈 7일전	상품 미공급시	
	[쿠킹가이즈]	3,300	110~165		상품 미공급시	옵션포함
POS	[쿠킹가이즈]	2,750		오픈 7일전	상품 미공급시	
간판	[쿠킹가이즈]	4,400~4,950		오픈 7일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외장공사	[쿠킹가이즈]	별지3 참조		오픈 7일전	공사전 계약취소	
김타(점포별 품목)	[쿠킹가이즈]	별지3 참조		오픈 7일전	계약체결후 10일이내	
홀집기	[쿠킹가이즈]	3,300~4,400	147~165	오픈 7일전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의,탁자
최초공급상품비용	[쿠킹가이즈]	12,000~13,000		공급후 7일이내	상품 미공급시	
검수비	[쿠킹가이즈]	3.31㎡당 220	220		계약취소	인테리어 직접시공
	[쿠킹가이즈]	3.31㎡당 165	165		계약취소	설비 직접 구입

5) 당사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A/S 요청접수 후 A/S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하자보수 예외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동, 식물이 부패되어 냄새가 발생시, 인테리어 시공의 문제점이라고 제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 A/S기간이 지난 후 인테리어 보수를 요청하였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인위적이 아닌 자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또는 기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인테리어의 공사가 재 시공할 경우입니다.

- A/S기간 내 가맹점사업자가 A/S요청에 의하여 인테리어 보수를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물이 파손 되었을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시설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해당비용을 책정하여 시공합니다.

- 소모품목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구입 또는 시공하여야 합니다.

- 전기의 소모품목은 전구, 차단기, 주방집기류, 전기(누전이나, 승압), 후드 등이 있습니다.

- 수도와 관련한 소모품목은 냉온기 수전, 코브라, 수도꼭지 등이 있습니다.

- 건물 준공도면상의 수전노화 및 외부충격으로 인한 누수와 하수도 막힘은 가맹점사업자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 의탁자의 집기류 중 테이블파손, 충격에 의한 유리 파손등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건물상의 문제 및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6) 점포크기 및 형태에 따른 기준표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육회이야기							
크기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	개업지원	의탁자	pos	합계
66.1㎡ ~95.86㎡	3.3㎡당 1,760	4,400	16,500	1,650	3,300	2,750	63,800 ~ 79,640
99,17㎡		4,950	16,500	1,650	4,400	2,750	83,050

7) 가맹점 입지 선정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희망자 (단, 당사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희망자 의뢰→상담을 통한 가맹점 희망지역 파악 →담당자 배정→현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최적의 입지도 출(역세권, 대형병원, 사무실 밀집지역, 사우나, 아파트·주 택밀집지역, 찜질방, 중심상업지역, 골프연습장 주변 등)→ 가맹점희망자와 상담→가맹점희망자 결정

8)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없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없음	만18세 이상의 보건증을 소유한 자

-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에 대하여 [육회이야기]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는 종업원의 복장색깔, 규격, 매뉴얼등을 통하여 통제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내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종업원들이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및 지시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9)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10)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개설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설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단위:천원)		총액의 40%	총액의 30%	총액의 30%
납부일		계약일	계약후 15일 이내	계약후 20일 이내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 될수없는 사유	비고
신메뉴교육	(주)쿠킹가이즈	재료비 부담	교육 전 2일내	해당없음	-
특별교육	(주)쿠킹가이즈	개별교육에 따라 협의 후 산정	교육 전 2일내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교육훈련
로열티	(주)쿠킹가이즈	연1,980	재계약후 30일 이내	계약해지시 잔여일수만큼 상계처리하여 반환	
재교육	(주)쿠킹가이즈	공동협의	교육 전 3일내	교육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훈련
관측분담비	(주)쿠킹가이즈	공동협의	실시 7일 이내	관측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 가 청구
광고분담비	(주)쿠킹가이즈	연 1,100~1,650	광고전 45일 이내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시행되는 공동광고로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으며, 미실시 시 반환.	가맹본부 가 청구
인테리어, 시설, 간판 교체·보수	(주)쿠킹가이즈	1,650~22,000	교체·보수 후 10일 이내	시설, 인테리어, 간판등의 내부연수등을 감안하여 교체·보수 실시하며 공사후 반환되지 않음.	
pos사용료	(주)쿠킹가이즈	월 165	익월 10일	반환되지 않음	메타시티 공급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구분 (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천원)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관리 : POS를 통한 재고의 유무확인 및 월 1회 슈퍼바이징 활동을 통한 관리실시.
- 회계처리 : 당사가 지정한 “세무법인 광장”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로열티	연 1,980	매월10일	해 지 시, 잔여일수를 상계처리하여 반환	-	
인테리어, 시설, 간판교체·보수	1,650~22,000	교체·보수 후10일 이내	-	교체·보수를 실시하여 공사비용 발생	
점포이전비	협의를 후 결정	점포이전 완료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았을 경우	-	점포이전 합의시
교육비용	2,200	양도전 7일 이내	양도를 하지 않고, 초기가맹점사업자 운영할 경우	양도, 양수가 일어났을 경우	양도양수 체결시 발생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연장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로 연 1,980천원의 로열티를 재 계약시점에 일괄 납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 추가로 교육비용 일금이백이십만원정(₩2,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사실을 반드시 양수인에게 고지 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육회이야기] 운영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육회이야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용 일금이백이십만원(₩2,200,00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 일금이백만원(₩2,000,000)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 상호·간판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육회이야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육회이야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아니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본사가 권장하는 업체에게 경제적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육회이야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메뉴	한우고추장육회	왼쪽에 기재된	1회위반 : 구두경고	
	한우깍둑육회 200g	이외의 상품을	2회위반 : 2회이상의 서면시정요구	
	한우깍둑육회 400g			

육회나가사끼짬뽕	판매할 수 없으며, 왼쪽에 기재된 상품은 반드시 매장에서 판매 되어야함.	3회위반 : 계약해지	
스페셜모듬한우육회			
한우타다끼			
모듬한우육회			
육회간자미무침			
한우반반육회			
한우스지오텡탕			
우육탕			
한우육사시미			
육회&타코와사비			
한우육회200g			
한우육회400g			
육회물회			
한우육회비빔밥			
한우육회주먹밥			
치즈감자육전			
육번데기탕			
소.소.야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needs가 변화함에 따라 신메뉴를 개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을 이행하고 신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등 청소년, 미성년자	고추장육회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위반:구두경고 2회위반:2회이상의 서면시정요구 3회위반: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명	판매가	중량(g)	가격통보방법	비고
메뉴	한우고추장육회 200g	22,900	200	가맹점사업자에게 일괄통지	
	한우각둑육회 200g	22,900	200		

한우각둑육회 400g	33,900	400		
육회나가사끼짬뽕	21,900	1930		
스페셜모듬한우육회	51,900	550		
한우타다끼	26,900	200		
모듬한우육회	39,900	400		
육회간자미무침	20,900	250		
한우반반육회	34,900	400		
한우스지오탕탕	21,000	1850		
우육탕	9,900	800		
한우육사시미	46,900	400		
육회&타코와사비	19,900	200		
한우육회200g	22,900	200		
한우육회400g	33,900	400		
육회물회	21,000	1850		
한우육회비빔밥	13,400	1000		
한우육회주먹밥	10,900	1000		
치즈감자육전	18,900	1200		
육번데기탕	8,900	800		
소.소.야	14,900	8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회여건 및 국가경제적 여건,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해 11월 ~ 12월에 설문조사 후, 차기년도 1월~3월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육회관련 가맹사업	육회이야기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특수상업시설 당 1점포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8차선이상도로의 건너편 당 1점포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행정구역당 1점포(서울:동/지방:면)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점포를 중심으로반경 500m당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배후지역 세대수3,000세대당 1점포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지하철역당 1점포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점포앞 1일 유동인구 5,000명당	계약 체결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영업지역 변경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를 얻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달을 통하여 영업하는 지역은 영업지역보호에서 제외된다. 즉,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영업지역구분은 거리나 선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며, 면으로 구분되어 지므로 입점된 매장의 70%이상의 유입되는 고객의 범위를 영업지역으로 정한다.
- 15층이상 또는 거주인구가 300인 이상, 유동인구 1일 10,000명 이상의 고층빌딩이 있을 경우 영업지역은 구분되어 지며, 언덕이나 구릉이 있을 경우도 구분되어 진다.
- 당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영업지역을 재조정 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업시설 및 15층 이상의 고층건물(거주인구 300인 이상)이 입점할 경우
 - 지역재개발 및 도시계획화 구역과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을 경우
 - 대형 쇼핑몰 및 백화점, 할인마트, 300배드(bed) 이상의 병원이 입점할 경우
 - 지하철 역사의 개편이 있을 경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육회이야기’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넷째, 가맹점사업자가 Delivery(배달)을 통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500m 내 합의되지 않은 광고 및 홍보(전단지, 지역광고책자, 자석스티커등)를 통하여 매출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의 영업지역구분은 거리나 선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며, 면으로 구분되어 지며, 입점된 매장의 70%이상의 유입되는 고객의 범위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정합니다.
- 15층 이상 또는 거주인구가 300인 이상, 유동인구 일일 10,000명 이상의 고층빌딩이 있을 경우 영업지역은 구분되어 집니다.
- 언덕이나, 구릉으로도 영업지역은 구분되어 집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유희이야기]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계약만료일:)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 거절(종료)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52조 2항 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갱신 조건이나, 로열티를 귀하가 수락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2조 2항 2호
가맹점 운영에 중요한 통상적인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2조 2항 3호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본부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56조1호
가맹본부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56조2호
가맹점사업자가 자체법인명의 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되는 명칭에 가맹본부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신청 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제56조3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요청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부착된 제품과 기타 가맹점설비, 상품·용역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제56조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서 매뉴얼 등의 정보를 누출한 경우	제56조5호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기타 고객 등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보험 (화재, 영업배상 등)에 가입하지 않아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56조6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2개월에 걸쳐 1회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6조7호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서, 매뉴얼 등의 정보를 누출한 경우	제56조8호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상품대금결제 의무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56조9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	제56조10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3월이 지나도 매장을 오픈 하지 못한 경우	제56조1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54조2항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54조2항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54조2항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4조2항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4조2항5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54조2항6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4조2항7호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54조2항8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4조2항9호

5) 계약수정의 사유, 사전통보 여부 및 동의절차

- 당사는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의 수정을 요청 하지 않으나 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최소 가맹계약 만료 90일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사실에 대하여 동의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으며 동의시 계약이 연장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후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②	양도 절차 ^③	비고 ^④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신청서 작성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 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1811-0068)
양수인은 반드시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불할 것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차	기타의무사항
상속	가족관계 증명서	모든 권리 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상속,대리 행사,위탁신청서 작성→ (상속인과의 관계서류 제 출)→가맹본부승인→계약 서 작성→가맹비,교육비입 금→완료(총15일 이내)	교육수료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교육비지급
위탁	가맹본부 승인시	위탁계약서상의 권리 의무		가맹비, 교육 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육회이야기]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

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육회를 제공하는 업종 육회전문점 및 육회판매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임원진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운영부 (1811-006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 [육회이야기]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전일 영업	연속휴무일 3일 이하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 당사 [육회이야기]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가 반드시 영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근무여부	대체가능인력	비고
3명 이상	-	가맹점사업자, 신입직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은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쿠킹가이드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활동 조건 및 비용분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전체행사	상품광고	50%	50%	광고계획 → 가맹점의 광고 설문조사 → 전국 가맹점의 60%이상 참여 여부 결정 → 광고계획공지 → 가맹점부담액 제시	-대중매체 -명절 -이벤트 (전국,지역행사)
	가맹점모집광고	100%	-		
	인지도광고	50%	50%		
상품권		100%	-	상품권 발행→가맹점에서 상품권 회수→비용처리	수시
관측행사	할인행사	50%	50%	행사계획→가맹점부담액제시→행사실시	할인금액
	증정행사	50%	50%	"	증정품 출고가
	관측물	30%	70%	"	제작비용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제휴서비스	멤버십 쿠폰	-	100%	가맹점 멤버십 쿠폰 발행	수시
	멤버십 카드	-	100%	가맹점 멤버십 카드 발행	수시
	할인서비스	10%	90%	상품당 할인금액 제시→실행여부 결정→가맹점 공지	할인서비스 종료시까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지역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득한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6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금 육천만원(₩60,000,000원)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금오십만원(₩500,000원)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45일)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 및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업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관촉인원 파견 및 기념품 등의 관촉물 선택 지원	개업지원비를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며, 가맹점의 위치 및 고객의 타겟팅, 면적에 따라 경우 관촉인원 수 및 관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2일간	1,000 한도	
개업선물	가맹점 오픈시 가맹점에 필요한 상품 지원	가맹점 개설 후 오픈	오픈일	150	

3. 경영활동 지원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1811-0068)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1인 330,000원)	문의: 운영팀 (1811-0068)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육회이야기] 가맹점사업자에게 대출알선 및 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 프로그램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당사는 [육회이야기]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개점 전)교육	5일(4박5일 합숙)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수시교육	3일	1인 330	요청 교육
신메뉴 교육	1일	재료비 부담	필수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당사 [육회이야기]의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받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인테리어 시공완료 후, 1년 동안 가맹점사업자의 파손이 아닌 하자보수로 인하여 A/S가 발생시 무료로 시공 처리합니다.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 상품공급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2회이상 불참할 경우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개점 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8조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18조에 따라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오픈을 연기하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을”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한 기본인원은 반드시 매장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가맹점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 한 기본인원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을”의 가맹점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료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픈에 필요한 최소한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픈을 연기하며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IX.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자금지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출부진 경영지원	해당 사항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1-1] 인테리어(육회이야기)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1-2] 인테리어(점포별 품목 / 외장공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지2] 간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1588-669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jukstory.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본사 보관용)

“본인은 (주)쿠키가이즈의 브랜드인 “유희이야기”의
정보공개서를 14일 이전에 정히 제공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수령일자 : 년 월 일
수령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장소 :
주소 :
연락처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주)쿠키가이즈의 브랜드인 “유희이야기”의
정보공개서를 14일 이전에 정히 제공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수령일자 : 년 월 일
수령자 :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장소 :
주소 :
연락처 :